■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[별지 서식]

사고보고서(제9조제1항 관련)

[ ] 사고 보고

기준일시: 20 년 월 일 시
보고기관:

□ 사고개요

(6하 원칙에 따라 작성)

** 현지기상:

□ 선박제원

선 명 (선박번호)	총톤수 (화물)	선 종 (선적항)	승선원 (국적)	소유자 또는 선박회사

** 보험 현황:
** 적재유류 현황:

□ 피해사항

ㅇ 인 명:
ㅇ 오 염:
ㅇ 선박 · 시설물 등:
** 사고 추정원인:
** 선박(어선)이 나포된 경우, 위반내용 및 담보금 등

□ 조치사항

□ 조치계획

(참고사항) ① 보고서는 가급적 사고개요 → 피해사항 → 상세제원 → 조치사항·계획 등 순으로 파악하여 작성하되 확인·추정 중인 사항은 '인명피해: 확인 중 또는 00명(추정)' 등으로 기재하고, 오염피해는 오염의 확산범위로 기재(유출 추정량은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경우에 병기)

② 보고자는 사고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」(중앙해양안전심판원훈령)에도 불구하고, 피해 경중에 따라 충돌을 접촉으로, 접촉을 충돌로 기재하는 등 보고서에 사고의 종류를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음

③ 사고 초기에는 사고개요·피해 등 확인된 사항만 보고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거나, 보고내용을 추가·생략할 수 있음

))